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1, 1997, 247-274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김용하** 석재은***

Ⅰ. 서 론
Ⅱ. 여성의 연금가입 및 수급 현황
Ⅲ. 여성연금수급권 확보의 문제점
Ⅳ.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 론

Ⅰ. 서론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발생 중심, 세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 여성의 취약한 경제활동 특성이 결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여성의 노령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금분할제도는 여성의 노령연금수급권 확보라는 전체적인 틀속에서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형태별(life style)로 다양하게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소득보장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여성의 권익 혹은 복지적 측면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1]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9년

* 본 논문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좋은 도움 말씀을 주신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 신낙균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김연명 상지대 교수, 이상덕 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장, 나경희 국민회의 여성국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본 논문의 심의를 맡아 유익한 조언을 하여 주신 세분의 익명의 논평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Brocas, A. M. et al. *Women and Social Security,* ILO, 1990; Reidga, George E., *Social*

을 경과하고 있고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여성연금수급권 확보가 현안과제로 제기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측면에서 공적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여 궁극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로 초점이 되어 왔던 배우자 소득에 의존한 파생적 의미의 수동적 연금수급권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연금수급권에 대한 법률 및 판례검토, 연금수급권을 결정짓는 여성의 경제활동형태의 특징에 관한 분석,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여성연금수급권 현황 분석,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외국의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여성연금수급권 개념의 재정리(Ⅰ), 여성의 연금가입 및 수급 현황(Ⅱ),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징 및 연금제도의 문제점 분석(Ⅲ)의 기반위에 외국의 여성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Ⅳ)을 제시하고,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Ⅴ)하고 있다.

1. 가족주의 원칙과 여성연금수급권

여성이 연금수급자격을 가지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이 본인의 이름으로 일정기간 이상 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이 주체적으로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여성이 생계를 의지해왔던 배우자 혹은 부모가 사망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 등 파생적 의미의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경우이다.

노령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가족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서 가족주의적 원칙은 소득을 버는 남편을 중심으로 소득단위를 구성하고, 이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이 취업자인 경우에는 별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Fifth Edition, Prentice Hall, 1994; U.S. House, *Pension Equity for Women,*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Washington: U.S. Government Office, 1983; Miller, D.C., *Women and Social Security,* ILO, 1990; 屈勝洋, "여성과 연금", 「계간 사회보장연구」, 31(4), 1996, pp. 353-367; 勝井良治, 「연금과 여성의 자립」, 사회보장연구소 편, 「여성과 사회보장」, 동경대 출판회, 1993, pp. 183-202.

도의 소득단위로 인정되고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지만,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남편의 소득 및 연금에 종속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즉 남편 중심의 가족 소득단위 모델에 근거한 연금제도하에서 노령시 부인은 남편의 퇴직후 수급하는 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의 일반화에 따라 여성은 피부양자로서의 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남편과 대등한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 연금제도의 설계당시 모델이 되었던 가족형태는 수십년에 걸쳐 일반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가족의 변화는 부인=주부라는 등식을 변화시켰다. 또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부부관계도 반드시 평생동안 지속되는 관계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으로 변모하는 여성의 위상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를 구성, 발전시키고 있으나,[2]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아직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가족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2. 여성연금수급권의 법적 근거

여성연금수급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생존권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민법상의 사적인 재산권에서의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존권적 기본권[3]의 하나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3항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장애,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선상에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권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안에 의한 정함이 없는 경우 정치적 혹은 도의적 책임만을 규정할 뿐이라는 설, 법적인 권리이나 추상적인 권리라는 설, 청구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설 등이 대립하고 있어서[4] 구체적인 연금청구권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생존권적 차원에서는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여성연금수급권을 생존권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여성의 소득보장 문제를 국가의 지원에 의한 공공부조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혜자적인 입장으로 여성

2) U.S. House, *Pension Equity for Women*,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Washington: U.S. Government Office, 1983.
3) 구병삭, "생존권 보장의 법적 성격", 『고시계』, 236, 1976. 10. pp. 41-50.
4) 구병삭, 전게서.

을 설정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여성의 자주적 권리신장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여성연금수급권을 민법상의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로서 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5] 여성의 경제적 자립의 입장에서도 여성 스스로가 재산의 하나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적재산권은 그 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여성이 연금수급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의 연금수급권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부가 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각자의 명의에 따라 각각의 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6]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연금수급권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배우자의 사망시에만 배우자의 유산의 하나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파생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한편, 현행 연금제도는 별도소득을 가지지 않은 협업여성의 경우 세대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7] 따라서 전업주부 및 협업여성은 일상생활중 사고 등에 의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장해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이혼시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연금의 혜택을 간접적으로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업주부 및 협업여성 등이 남성과 동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노령, 장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공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체적인 여성연금수급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제도내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 연금

여성의 평균수명은 1995년 현재 77.4세이며, 남자의 평균수명은 69.6세로 약 7.8

---

5) 민법 제826조-839조 참고.

6) 민법 제830조(특유 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7) 국민연금법 제10조(지역가입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 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년의 차이가 있으며, 60세 남녀의 평균여명은 각각 15.5년, 20.1년으로 평균여명의 차가 약 4.6년이 있다. 또한 결혼연령도 남자가 28.4세, 여자가 25.3세로 3.1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여명의 차와 결혼연령의 차를 더하면 남편이 은퇴한 부인은 평균 7.7년을 남편보다 더 살게 되며, 부인은 그 7.7년간을 남편의 유족연금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게 된다.[8] 따라서 여성의 노령연금수급권은 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애와 연금과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크게 3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양자로서 자녀기인 17세까지(제1기), 국민연금가입자로서의 18세에서 59세까지(제2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60세이후(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제1기와 제2기의 경계는 학업기간 등의 요인이 존재하므로 개인별로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2기는 직업활동의 여부 및 형태에 따라 연금에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출산, 육아의 시기가 중복되는 시기로서, 이로 인하여 직업활동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맞기도 한다. 제2기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제3기의 주체적인 연금수급권이 결정되므로 제2기는 여성연금수급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기 삶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연금과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계속취업자(A형), 취업후 육아등으로 일시 퇴직후 재취업자(B형), 취업후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후 계속 비취업자(C형), 계속비취업자(D형).

A형의 경우 취업자로서의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취업형태가 일용직, 시간제, 임시직의 경우에 있어서 연금제도에 당연가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수급권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본인의 연금수급권과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수급권이 경합할 경우 현행 연금제도하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B형의 경우 A형의 경우와 유사하나 비취업기간 동안에 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연금가입기간이 짧아져 연금최소가입연수를 채우기 힘들 수 있으며, 재취업시 최초 취업보다 소득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연금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수 있다.

C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금수급 최소자격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가입기간에 불입하였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되지만 별도의 연금수급권이 확보되지 않아 남편의 소득 및 연금에 의존적이게 된다.

D형의 경우에는 C형의 경우와 유사하나 일생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연금제도에 전혀 가입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소득 및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특히 이혼시 C형과 D형의 경우에는 이혼한 부인의 연금수급권은

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통계청, 「장래인구 분석과 전망」, 1996.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령소득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Ⅱ. 여성의 연금가입 및 수급 현황

1995년 현재 국민연금 여성가입자는 189만명으로 전체가입자의 26.1%에 불과하여, 남성가입자의 537만명과 비교할 때 크게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여성가입자 비중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시기인 1988년의 30.6%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1988년부터 1995년간의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여성은 4.9%로 남성의 8.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이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를 모두 합하여도 여성연금가입자는 221만 1천명으로 15세이상 여성인구의 15.0%, 여성경제활동인구의 28.9%에 불과하다.

이는 먼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사업장연금의 경우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남성, 여성 모두가 가입토록 되어 있으나, 여성의 경우 피용자 형태로 가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임시직,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등 불완전한 형태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역연금은 부부세대 중심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성이 취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종사자 등은 공적연금에 당연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1>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단위: 명, %)

	전 체	남 자	여 자
1988	4,432,695 (100.0)	3,076,928 (69.4)	1,355,767 (30.6)
1989	4,520,948 (100.0)	3,173,649 (70.2)	1,347,299 (29.8)
1990	4,651,678 (100.0)	3,278,753 (70.5)	1,372,925 (29.5)
1991	4,768,536 (100.0)	3,383,407 (71.0)	1,385,129 (29.0)
1992	5,021,159 (100.0)	3,598,074 (71.7)	1,423,085 (28.3)
1993	5,159,868 (100.0)	3,733,416 (72.4)	1,426,452 (27.6)
1994	5,444,818 (100.0)	3,945,744 (72.5)	1,499,074 (27.5)
1995	7,257,393 (100.0)	5,365,706 (73.9)	1,891,688 (26.1)
연평균 증가율(%)	7.3	8.3	4.9

註: ( )는 구성비를 의미함.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가입형태별로 보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8~29세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은 임의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만3천명이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어 이들 연령층의 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가입형태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현황(1995)

(단위: 명)

	전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18~19세	145,769	145,629	132	8	-
20~24세	584,559	567,004	17,373	182	-
25~29세	273,805	243,911	28,926	968	-
30~34세	126,685	104,215	21,037	1,433	-
35~39세	146,874	121,401	23,615	1,858	-
40~44세	140,965	115,764	23,060	2,141	-
45~49세	127,410	96,529	28,954	1,927	-
50~54세	134,603	75,648	56,725	2,230	-
55~59세	157,313	44,753	109,151	3,409	-
60세이상	53,705	-	51,266	-	2,439
전 체	1,891,688	1,514,854	360,239	14,156	2,439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한편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20~24세의 연령층의 경우 총인구의 28.2%, 취업자의 44.9%가 가입하고 있어 전연령계층중 가장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34세의 경우 총인구의 4.3%, 취업자의 11.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전 연령계층 중 가장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즉 20~24세 까지 국민연금가입율이 높아지다가 25~29세 연령층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30~34세 연령층에 최저점을 보인 이후, 35~39세 연령층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50~59세 연령층까기 계속하여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에 따른 것이다. 즉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1%이나, 20세대 후반부터 30세대 전반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47.8%, 47.5%로 하락하다가 30대 후반부터 59.2%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위 M자형 커브라고 일컬어지는 유형에서 출산, 육아로 이직하는 모양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3> 여성의 국민연금가입 현황(1995)

(단위: 천명, %)

	인 구 (A)	경제활동 인구 (B)	취업자 (C)	국민연금 가입자 (D)	D/A	D/B	D/C
15~19세	1,834	267	247	146	8.0	54.7	59.1
20~24세	2,073	1,370	1,304	585	28.2	42.7	44.9
25~29세	2,001	957	940	274	13.7	28.6	26.3
30~34세	2,029	964	956	127	4.3	13.2	13.3
35~39세	1,935	1,146	1,137	147	7.6	12.8	11.9
40~44세	1,448	956	949	141	9.7	14.7	14.9
45~49세	1,228	750	746	127	10.3	16.9	17.0
50~54세	1,085	633	631	135	12.4	21.3	21.4
55~59세	1,012	549	546	157	15.5	28.8	28.8
60세이상	2,662	770	768	54	2.0	7.0	7.0
전 체	17,307	8,363	8,224	1,892	10.9	22.6	23.0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한편, 소득분포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저소득 등급에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등급인 1등급 소득계층중(월소득 22만 5천원미만) 여성가입자의 비중은 30.5%, 2~10등급의 동비중은 42.5%, 11~15등급의 동비중은 49.9%, 16~20등급의 동비중은 30.0%인 반면, 고소득등급인 36~40등급에는 2.6%, 41~44등급은 3.1%, 45등급은 4.0%로 고소득등급의 여성비중은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하나는 여성의 근로기간 동안의 저소득이 노후의 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높은 소득재분배적 성격으로 저소득층의 연금수익비(연금급여/연금보험료)가 고소득층의 연금수익비에 비하여 크게 높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는 연금수익비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25~34세 사이에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하여 반환일시금을 수급함으로써 이러한 유리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공적연금수급자 동향을 보면 1995년 현재 총 여성노령연금 수급자수는 1만 5천명 정도로 총 노령연금수급자의 31.1%, 60세이상 여성인구의 0.55%만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적연금수급율이 낮은 이유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높은 일시금 수급비율로 인하여 연금수급자가

초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에 기인하며,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연금제도가 도입된지 겨우 9년을 경과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성별 표준보수월액 등급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1995)

(단위: 명, %)

표준보수등급	평균보수월액	전체(A)	남자(B)	여자(C)	C/A
1등급	225,000미만	495,986	344,761	151,225	30.5
2~10등급	225,000~385,000	600,977	345,313	255,664	42.5
11~15등급	385,000~595,000	1,356,298	679,270	677,028	49.9
16~20등급	595,000~885,000	1,691,649	1,183,558	508,091	30.0
21~25등급	885,000~1,250,000	1,387,004	1,192,838	194,166	14.0
26~30등급	1,250,000~1,710,000	906,887	835,608	71,279	7.9
31~35등급	1,710,000~2,245,000	492,851	468,433	24,418	4.9
36~40등급	2,245,000~2,730,000	192,538	187,449	5,089	2.6
41~44등급	2,730,000~3,450,000	66,929	64,823	2,106	3.1
45등급	3,450,000이상	66,275	63,653	2,622	4.0
전	체	7,257,394	5,365,706	1,891,688	26.1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표 5>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1995)

(단위: 명, %)

		전 체 (A)	여 성 (B)	B/A	B/(60세이상 여성인구)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38,162	6,421	16.83	0.24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51,713	7,757	15.00	0.29
사학연금	퇴직연금	3,646	446	12.23	0.02
전	체	46,979	14,624	31.12	0.55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5.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5.

한편 비교적 여성관련 연금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동향을 보면,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수급자, 특례노령연금수급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 총가입자중 여성가입자의 비율은 26.1%에 불과하나 반환일시금중 여성수급자 비율은 48.2%를 차지하여 여성의 높은 중도탈퇴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4세 연령층의 경우 총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여성의 비중은 81.1%, 25~29세 연령층의 경우 동비중은 66.1%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족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92.2%)이다.

<표 6>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1995)

급여종류	전 체(A)	여 성(B)	B/A
특례노령연금	38,162	6,421	16.8
장해연금	7,088	602	8.5
장해일시보상금	1,529	142	9.3
유족연금	34,009	31,373	92.2
반환일시금	796,628	384,153	48.2
사망일시금	686	206	30.0
계	878,102	422,897	48.2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표 7> 여성의 연령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현황(1995)

(단위: 명, %)

	19세 미만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 이상	계
전체(A)	589	107,195	230,555	142,276	105,891	65,339	46,306	36,230	32,555	26,692	796,628
여성(B)	379	86,952	152,355	45,865	26,133	20,629	16,879	14,530	12,585	7,846	384,153
B/A	64.3	81.1	66.1	32.2	24.7	31.6	36.5	40.1	38.7	29.4	48.2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95.

Ⅲ. 여성연금수급권 확보의 문제점

1.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연금수급권

여성의 연금가입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계있다. 즉 1995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의 76.5%보다 낮은 48.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970년의 77.9%에서 1995년 76.5%로 1.4%포인트 하락했음에 비해 여성은 같은 기간에 꾸준하게 상승하여 1970년 39.3%, 1980년 42.8%, 그리고 1995년에는 48.3%로 증가하였다.

<표 8>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 체	남 자	여 자
1970	10,062	57.6	77.9	39.3
1975	12,193	58.3	77.4	40.4
1980	14,431	59.0	76.4	42.8
1985	15,592	56.6	72.3	41.9
1990	18,539	60.0	74.0	47.0
1995	20,797	62.0	76.5	48.3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1995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8.3%는 외국의 여성 경제활동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스웨덴의 77.3%, 덴마크의 62.0%, 캐나다의 57.5%, 미국의 55.7%, 핀란드의 55.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47.5%, 독일 46.1% 등의 선진국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지역의 선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연령별 특징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19세 저연령층의 참가율은 상급학교 진학율 상승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1970년의 47.3%에서 1995년 14.6%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15~19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4세 연령층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같은 기간중 47.3%에서 66.1%로 무려 18.8%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활발해졌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등으로 25~34세 연령층

의 참가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이들 연령층에 비해 40~50대 연령층의 증가율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결혼,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단절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에서 M자형의 모습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동과 함께 80년대 이후 25~54세 여성인구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경제활동인구의 구성변화가 이루어졌다. 즉 15~24세 연령층의 비율이 1970년의 32.5%에서 1995년의 23.5%로 감소하고, 25~54세 연령층 여성이 같은 기간중 58.8%에서 57.0%로 약간 감소하고 55세이상 연령층이 8.7%에서 19.5%로 크게 증가하였다. 25세이상 연령층을 기혼여성으로 간주한다면, 여성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기혼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한 55세이상 고령층여성의 비중이 크게 늘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부녀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외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국 가	기준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전 체	남 자	여 자
한 국	1995	62.0	76.5	48.3
싱가포르	1993	64.5	79.1	50.6
일 본	1993	63.8	78.0	50.3
필리핀	1993	64.7	81.8	47.8
홍 콩	1993	62.5	78.1	46.5
이스라엘	1993	52.9	62.8	43.4
프랑스	1993	55.0	63.1	47.5
독 일	1992	58.3	71.6	46.1
이탈리아	1991	42.5	54.9	30.7
포르투칼	1993	58.2	68.3	49.3
네덜란드	1993	61.5	75.5	46.9
덴마아크	1993	68.2	74.6	62.0
스웨덴	1993	79.1	81.0	77.3
핀란드	1993	61.3	67.7	55.4
미국	1993	63.3	71.5	55.7
캐나다	1993	65.2	73.3	57.5
아르헨티나	1990	53.4	78.7	29.1
호주	1993	62.6	73.7	51.8

資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5.

<표 10>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이

(단위: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체
1970	43.7	47.3	34.7	38.4	42.7	46.9	46.6	41.1	37.1	14.9	39.3
1975	40.5	47.3	29.5	37.0	48.0	51.6	50.9	50.8	44.8	17.1	40.4
1980	34.4	53.5	32.0	40.7	53.0	57.0	57.3	54.0	46.2	17.0	42.8
1985	21.1	55.0	35.8	43.6	52.8	58.3	59.3	52.4	47.2	19.2	41.9
1990	18.6	64.5	42.8	49.6	58.0	60.5	63.9	60.0	54.4	26.5	47.0
1995	14.6	66.1	47.8	47.5	59.2	66.0	61.1	58.3	54.2	28.9	48.3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교대상국에 비해 20~30대 연령층의 참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5~29세 연령층의 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의 서비스화와 시간제 취업기회와 같은 인력수요측 여건이 차이가 있고 탁아시설을 비롯한 가사서비스의 보급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9]

<표 11> 외국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92)

(단위: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전 체
한 국	17.4	65.3	44.3	47.8	57.8	60.4	60.9	60.8	54.1	44.9	19.6	48.3
일 본	17.6	75.6	64.0	52.7	62.4	70.5	72.0	67.6	55.7	40.7	16.7	50.3
대 만	21.3	62.6	61.8	55.2	57.8	55.4	48.9	40.2	30.9	20.3	4.1	-
싱가폴	28.6	80.2	77.8	64.7	56.9	54.5	47.6	36.6	22.7	12.6	4.5	50.6
미 국	38.5	69.1	74.2	74.2	75.7	77.8	75.9	70.2	57.4	36.6	7.7	55.7

資料: 양승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형태 분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4.

한편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내역을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0.9%이고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59.1%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수는 거의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상용 및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지역의 무급가족종사자수가 노령화등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의 임금근로 여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 양승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형태 분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4.

<표 12>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1995)

(단위: 천명)

전 체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상용 및 임시	일용
8,224 (100.0)	3,364 (40.9)	276	1,335	1,754	4,860 (59.1)	4,043	816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5.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특징으로서 시간제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시간제근로자의 비율은 1980년의 45.9%에서 1993년에는 64.9%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시간제형태의 업무유형의 공급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이러한 업무형태의 변화가 여성들의 노동공급상의 제약요인(육아 등 가사노동)을 일부 해소하여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0]

<표 13> 시간제 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전체근로자			여성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
	임금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비율	임금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비율	
1980	6,464	231	3.6	2,049	106	5.2	45.9
1985	8,104	248	3.1	2,810	134	4.8	54.0
1990	10,865	463	4.3	4,159	305	7.3	65.9
1993	11,751	570	4.9	4,404	370	8.4	64.9

資料: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한편 여성 임시직근로자의 비율은 1980년의 21.2%, 1985년의 22.7%, 1990년의 22.7%, 1993년의 18.0%로 1985년에는 높아졌다가 1990년에 정체, 1993년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1] 1993년의 변화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남성에 비하여 높은 여성의 임시직근로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성의 연금수급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임시직근로자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0)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11) 김태홍, 전게서.

<표 14> 임시직 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전체근로자			여성근로자			여성 임시직 근로자 비율
	임금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 비율	임금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 비율	
1980	6,464	1,300	20.1	2,049	434	21.2	33.4
1985	8,104	1,390	17.2	2,810	638	22.7	45.9
1990	10,865	1,831	16.9	4,159	946	22.7	51.7
1993	11,751	1,718	14.6	4,404	794	18.0	46.2

資料: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이와같이 여성의 연금수급권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검토에서 분석되어진 여성의 연금수급권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에 비하여 크게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의 연금가입대상자의 축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의 연금수급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연금제도가 소득발생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없이는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활동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자영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취업자에 대한 연금가입 문제가 제기된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연금가입 문제는 현행 연금제도에서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행정상의 관리문제 혹은 제도적인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여성연금수급권 확보의 문제점

여성의 연금수급권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경우에 연금수급권 문제는 경제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현행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가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A형 · B형). 둘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 이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적연금제도의 당연적용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행 연금제도 가입의 전제가 되는 연금보험료 납입상에 있어서도 소득상의 제약을 받는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C형 · D형).

첫 번째의 경우는 주로 경제활동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불완전 취업을 하고 있

는 경우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에 도시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 때 자영자를 비롯하여 도시지역의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일부 일용직 등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나 현재 당연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 임시직근로자, 가족종사자 등의 연금가입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위의 문제가 되는 불완전 취업형태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에 비하여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의 경우, 무연금의 문제로서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국민연금이 보장하고 있는 노령, 장해,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된 여성의 라이프사이클 유형별 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C형 및 D형에 속한 비취업계층의 경우 18~59세, 즉 제2기의 기간 동안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자신의 장해발생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며, 남편이 사망시에도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12]

또한 60세 이후의 기간, 즉 제3기간 동안에는 남편이 생존할 경우 남편의 연금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으며, 남편 사망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는 있으나, 만약 이혼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의존하던 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은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과정에서 선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제로서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간에 연금제도를 둘러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맞벌이 여성의 노령연금수급에 있어서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연금 혹은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종종 남편의 소득에 기초한 유족연금이 종종 자신의 소득에 기초한 노령연금보다 높을 수 있다.[13] 맞벌이 여성의 대다수는 불규칙적인 혹은 시간제 고용 때문에 낮은 소득을 가지거나, 혹은 가족부양 때문에 수년동안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도 하며, 혹은 저임금 직종에 주로 고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여성은 본인의 노령연금보다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수 있으며, 이 때 본인이 갹출한 노령연금수급권은 상실하게 되어 본인의 갹출금은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국민연금급여율이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20년 가입시 70%, 30년 가입시 105%, 40년가입시 140% 수준이지만, 홑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20년 가입시 35%, 30년 가입시 52.5%, 40년가입시 70% 수준이 된다. 물론 부부 모두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였으므로 부부모두 연금을 수급하는 것

12) 남편사망시 피부양자인 처는 유족연금을 사망시점 이후 5년간만 수급할 수 있고, 18세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본인이 장애인이 아닐 경우 50세가 되어야 연금을 재수급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3조 및 제66조).

13)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Survivors' Benefits in a Changing World*, 1992.

은 당연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행 연금제도의 수익부담구조는 연금보험료 부담보다 기대 연금급여가 2.3배이상 높게 설계되어 있어 현세대의 연금급여를 위하여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홑벌이 부부의 2배를 후세대에 전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가 홑벌이 부부보다 자녀수를 적게 가진다면 이러한 형평상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와같은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는 각국의 경험에서 보여지듯이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 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본 논문의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Ⅳ.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여성연금수급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참가형태(임시직, 시간제근로), 생애주기별 경제참가율 및 참가형태의 변화(결혼, 양육기간 동안의 단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연금수급권의 확보를 위한 대책도 앞에서 제기된 문제와 같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방향은 경제활동 참여 여성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A형 및 B형), 다른 하나의 방향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C형 및 D형).

1. 경제활동 參與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방안

1) 불완전 취업자의 당연적용(A형, B형)

우리나라의 경우 불완전취업 대상자는 불완전취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종사형태는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이다. 먼저 임시직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근무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있다. 셋째, 농어촌지역의 경우 일용

직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될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1/2을 불입하여야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불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서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고 있다.

여성취업자가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임시직근로자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별사업장이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임시직근로여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만약 3개월 이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용직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국민연금 관리상의 문제이다. 즉 매일 매일 사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기업체 입장에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나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즉 일용직근로자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로 부터의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종의 사회보장혜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관리체계로는 일용직근로자공제조합(가칭)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안은 모든 일용직근로자로 하여금 일용직근로자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매매일의 근로기록을 사업주에게 확인받아 월별로 공제조합에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일용직근로자공제조합은 근로자로부터 신고받은 서류를 기초로 하여 개별기업에 정기적으로 각종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마찬가지로 개별근로자에게도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셋째, 농어촌지역 여성의 경우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행 연금제도가 별도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계로 가구주가 아닌 여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적용은 연금급여 지급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금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가구내 부부가 각각 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연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가족종사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개별가구별로 필요에 따라 추가가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남성이 가구의 대표로 가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넷째, 국민연금법에서 규정이 없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일반 자영자로 분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방안이 있다. 전자로 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최소한의 근로시간(예컨대 주 15시간) 규정을 설정하여 규정된 시간이상을 근로하는 시간제근로자는 당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신고받아 적용하면 될 것이나, 일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연금보험료 공동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시간제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는 해당 국가의 연금체계에 따라, 그리고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기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14]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캐나다, 핀란드, 호주)에서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소득보장기준을 정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따라서 일정 연금수급연령(대개 60~67세)에 도달하면 시간제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연금급여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원적인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근로시간, 임금수준, 보험료 납부액, 납부기간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시간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덴마크에서는 67세 이후가 되면 누구든지 국민노령연금을 받지만 보충연금제도는 적어도 주당 1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는 연금제도의 가입이 의무적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하를 일하거나 월보수가 500마르크(1992년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또는 소득과 관계없이 1년에 2달 혹은 50일동안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적이지 않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이 직업을 함께 고려하지만, 특별한 직업으로부터 번 수입이 정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의 1/6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연금의 보험료 납부가 의무적이지 않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이하를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나 두개 이상의 시간제 직업을 가진 근로자는 가입토록 하고 있다.

2) 자녀양육, 개호기간의 가입기간 인정(A형, B형, C형)

여성이 결혼으로 직업활동의 중단이 불가피하던 상황은 서구를 중심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남자보다 조기에 설정해도 노령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양육을 일단락 짓고 다시 직업활동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임금, 직종보다 떨어지는 조건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 노령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하여도 연금액이 낮은 경

14)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우가 많다.

이러한 불리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을 직업활동 및 갹출액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안과, 자녀양육으로 직업활동을 중단했던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전자는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후자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15]

육아 등으로 인하여 직업활동을 중단하는 기간도 연금수급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경우, 많은 무업기간을 연금자격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양육한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프랑스는 양육하는 자녀 1인당 2년간의 피보험기간 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7세미만의 자녀양육으로 직업활동을 중단한 기간을 연금자격기간으로 하는 방안을 1977년에 도입하였다. 영국은 개호가 필요한 자녀 또는 성인의 양육기간을 소득비례연금의 자격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아로 인한 직업활동 중단기간을 연금자격기간으로 하는 것은 육아휴업기간의 연장과 병행하여 발전하여 왔다. 프랑스는 양친육아휴가기간을 노령연금갹출기간으로 하고 있으며(1982년), 스웨덴의 보족연금에는 1세부터 3세미만의 자녀양육으로 6개월이상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1년분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1982년).[16]

우리나라도 무급의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 제도의 시행은 현행 국민연금의 틀(무갹출 무연금)을 깨뜨리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들 보험료 면제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일반조세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경제활동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방안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스웨덴 등)의 경우 여성연금수급권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결국 여성연금수급권 문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데, 해결방식은 현행제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근본적인 방안까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임의가입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현행 연금제도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연수를 완하하는

15) 사회보장연구소 편, 「여성과 사회보장」, 동경대 출판회, 1993.
16) Sven E Olsson,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2nd, Arkiv forlag, 1993.

방안으로, 이는 부분적인 법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연금분할제의 도입으로, 이는 많은 서구 국가에서 이혼시 여성의 무연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안이며, 현행 연금제도의 부분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본인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인 1연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요구되는 방안이다.

1) 임의가입제도의 적극적 활용(C형, D형)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모든 여성들도 누구든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매스컴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위기론에 근거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높고 안전성도 훨씬 높다. 즉, 이자율, 물가상승율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2.3배로서 본인이 불입한 액의 2.3배를 수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만,[1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이자율,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볼 때 본인이 납입한 금액조차도 충분히 수급하지 못할 수 있다(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이윤 및 관리비가 급여에서 제하여지기 때문임).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인 1연금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다수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례가 있다(전업주부의 70% 내외).[18]

2) 최소가입연수의 완화(B형, C형)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반환일시금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19] 이는 국민연금제도를 저축제도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제도를 저축제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보장세의 일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여 가면서 초기의 저축제도적인 성격이 사회보장세적 성격으로 전환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단순히 개개인의 소득보

17) 김용하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18) 후생성연금국, 『후생연금·국민연금 평성원년재정재계산결과』, 1989.

19)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1995*,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 1995.,

장기능 뿐만 아니라 세대내·세대간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반환일시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에 있을 수 있는 가입자의 조세저항을 막고 노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단기가입자의 경우에도 일정율 이상의 이자율을 보장하는 저축제도임을 홍보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와 함께 초기 저축적 성격에서 나온 반환일시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수급요건이 최소한 15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하에서는 15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현재와 같이 퇴직이후 1년되는 시점에서 받지 못하고 60세 도달시점에 받게 되는 등의 개정에 대하여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없는 대신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연수를 극히 낮게 설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5년, 프랑스의 경우 3개월, 영국의 경우 약 52개월, 미국의 경우 10년 등 우리나라의 15년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이다.[20] 이들 국가에서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없으며,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 뿐만 아니라 일시금도 받지 못한다. 물론 일본과 같이 최소가입연수를 2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도 없지 않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반환일시금제도를 조정하고 여성 등 비교적 중단기 취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연수를 현행 15년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금분할제도의 도입(C형, D형)

여성의 연금분할권 개념은 연금제도 자체에서 나온 개념이라기 보다는 부부의 재산공유권의 개념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금수급권 자체도 일종의 재산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분할제가 연금제도내에 도입되지 않아도 법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이전에 사회제도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금제도내에 연금분할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 민법[21] 과 같이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를 채택하고 있으

20) 사회보장연구소, 전게서.

21) 일본의 경우 연금분할안과 관련하여 첫째, 민법상 임금 등에 관하여 부부간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으며(부부별산제, 민법 제762조 제1항), 또한 세법상 소위 2분2승방식(남편과 처가 합산액의 1/2에 세율을 곱하여 얻은 액의 2배를 부부가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방식)이 채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금만 부부간에 분할한다는 제도가 과연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현재 법제심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혼에 즈음한 재산분할(혼인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1/2씩)에 대하여 민법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인 문제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민법 제839조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연금수급권도 재산권의 하나로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혼시 연금'도 재산분할 청구대상이 되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22]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기간과 배우자의 가입기간과의 조정 문제, 결혼이전 가입기간과의 연결문제, 그리고 결혼이후 취업시 중복문제,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시 소득분할 방법 문제 등이다.

최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혼시에 부부의 연금(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분)을 등분하는 연금분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3] 1977년 독일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미국에서 이를 채용하였고, 영국은 검토중에 있다. 남편과 처는 부양-피부양 관계이므로 결혼생활 기간과 동일한 비율로 혼인기간중에 취득한 급여는 남편과 처가 각각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1977년 7월부터 이혼시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금분할의 방법은 연금수급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그 차액분의 절반을 이전하는 형태이다.[24] 연금분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점수를 이혼시점에 등분한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크게 사무직·육체·광산 근로자 연금 등 일반 공적연금과 자영자, 농어민, 공무원 등 기타공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금분할시 남편의 연금수급권이 기타 공적연금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적연금으로 분할분을 재정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남편이 획득한 소득(또는 부부 수입의 합계)을 부부가 절반으로 나누어 그 등분한 수입에 따라 각각의 연금수급권 관리를 한다.[25] 단 연금분할 청구시 혼인기간이 최소한 10년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이혼시에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 부터 남편과 처가 남편의 소득(또는 부부소득의 합계액)을 등분하여 각각의 연금수급권을 구별·관리한다.

캐나다의 연금분할제도는 소득비례부문 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전업주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혼시에 혼인기간중에 취득한 연금수급권은 부부가 평등하게 분할한다.[26] 단, 혼인기간이 최소한 지속적으로 12개월은 되어야 한다(1987년 법개정). 1987년 법개정 이전에는 그 혼인기간 조건이 최소 3년이었으나 1987년부터는 혼인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도 60세이상의 부부의 경우에는 희망할

22) 부산지방법원 민사, 사건번호 91 느 1226번.
23) Miller, D.C., *Women and Social Security,* ILO, 1990; Brocas, A. M. et al. *Women and Social Security,* ILO, 1990.
24) 사회보장연구소 편, 「도이치의 사회보장」, 동경대 출판회, 1986.
25) U.S. House, *Pension Equity for Women,*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Washington: U.S. Government Office, 1983.
26) 사회보장연구소 편, 「카나다의 사회보장」, 동경대출판회, 1989.

경우 연금분할을 인정해주고 있다. 혼인기간이 전가입기간의 70%인 경우에는 수급가능 연금액의 70%를 절반으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이 규정은 한쪽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연금액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처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남편이 소득비례연금을 수급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 처의 유족연금은 그것의 60%이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남편의 사망시에는 연금분할을 받은 처 본인의 50%에 남편의 유족연금 30%를 더한 80%를 받게 된다. 부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남편은 연금액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에서 이혼한 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27] 유족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혼한 여성이 부양료를 수급하고 있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이혼한 여성이 전남편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사망한 전남편의 처에게 혼인기간과 비례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28] 사망한 전남편이 재혼하지 않았거나, 재혼하였더라도 재혼후 2년이내인 경우에는 이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선택하여야 할 대안이 존재한다.

첫째, 연금분할제도를 이혼시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입기간중 계속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부부재산 합산제가 명백히 실시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여산정 업무가 번잡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이혼시에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연금분할대상을 모든 이혼시로 할 것인지, 최소혼인기간을 설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기간 설정여부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분할제도를 홑벌이 부부에게만 실시할 것인지,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실시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부부에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존에 관행을 크게 변동시키는 것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

27)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Survivors' Benefits in a Changing World*, 1992.

28) 사회보장연구소 편, 「프랑스의 사회보장」, 동경대 출판회, 1989.

넷째, 연금분할시 기술적인 문제로서 소득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는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위하여 본인소득 이외에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감안하게 되므로 저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이 고소득자의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소득을 1/2하여 각 개인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할 경우 분할된 두 개의 연금의 합이 원래의 연금액 보다 높게 되므로써 연금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연금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의 연금수급권에 의하여 발생한 연금급여액이 분할된 두 연금액의 합과 일치되어야 한다.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서 분할되는 급여액을 원래의 급여액 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분할되기 이전의 소득으로 연금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연금급여액을 1/2할 경우 연금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혼인기간중 소득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분할대상자가 되는 당사자들의 혼인전 가입기간과 이혼후 가입기간을 통산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분할대상 가입기간과 그외의 가입기간별로 별도로 급여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분할대상 가입기간의 급여는 분할이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 다음 이를 1/2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급여는 가입기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입기간의 별도산정에 따라 급여지급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4) 기초연금제도의 도입(C형, D형)

모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족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1인 1연금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 1연금체제는 현행의 일원화된 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와 소득비례연금제도로 분리하는 이원적 연금체계로 이행됨을 동시에 의미한다.

왜냐하면 1인 1연금체제로 이행할 경우 소득이 있는 자와 소득이 없는 자를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 및 보험료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할 경우 기준 보장수준이 너무 높아져 소득이 없는 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소득이 없는 자를 중심으로 할 경우 기준보장수준이 너무 낮아져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너무 낮음을 불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와 소득이 없는 자를 모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1층적 기초연금과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는 2층적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기초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가입자

는 물론 18세이상의 전업주부, 농어민 여성 및 가족종사자 여성은 물론 의무병역에 있는 군인, 재학중인 학생, 실업자등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29]

현재의 급여산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균등부분의 급여율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가입자 평균소득자의 경우 40%수준이다. 소득단위별 가입기준에서 1인 1연금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부부합산 기준에서 부부개별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연금급여는 현행 국민연금산식의 균등부분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므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액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은 유지하는 것이 연금제도가 가질수 있는 근로유인 저하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최소 가입기간요건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이 5년이므로 현행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기초연금의 재원은 현근로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부과방식에 의하여 조달하며, 원칙적으로 보험료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보험료를 소득비례로 부과할 것인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비례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나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비례방법의 도입은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요인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기초연금 보험료는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소득파악율이 높아지는 추이를 감안하여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고, 자영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납부하며,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보험료를 소득있는 배우자가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배우자의 보험료 기준소득은 소득있는 배우자 소득의 1/2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결혼후의 부부소득에 대한 기여를 평가할 때 각각 1/2로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연금보험료 면제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일괄적으로 1/3을 인정하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의 소

29) 김용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조정 방안", 「사회보장연구」, 12(2), 1996, pp. 31-68.

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여하한 경우에도 노령시 최소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일본은 1986년 기초연금제의 도입으로 고령의 이혼시에 여성의 무연금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이층부분인 소득비례연금에 있어서는 생별, 사별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30] 은퇴후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부인은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남편의 유족연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은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어 전업주부와 동일한 연금을 받게됨으로써 불만이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방안을 경제활동 참여여성과 경제활동 비참여 여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여성에 대하여는 3개월 임시직 근로자를 위하여는 당연적용 준수, 농어촌 지역 등 협업여성를 위하여는 임의가입제도의 적극 활용, 일용직 근로여성을 위하여는 일용근로자 관리제도의 도입, 시간제 근로여성을 위하여는 주 15시간 근로자 당연적용 규정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취업여성 및 중도탈퇴자를 위하여는 임의가입제도의 적극 활용, 연금수급자격기간 미충족 여성을 위하여는 최소가입자격기준의 완화, 이혼여성을 위하여는 연금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인 1연금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모든 여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적인 여성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연금수급권이란 공공부조와 같이 정부의 국고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연금제도 가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연금수급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연구되고 논의되어

30) 屈勝洋, "여성과 연금", 「계간 사회보장연구」, 31(4), 1996, pp. 353-367.

야 할 과제가 산재하여 있다. 본 논문이 여성의 연금수급권 신장을 위한 많은 연구가 시작되는 촉발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표 15> 여성연금수급권 보장 방안

	현행 제도에서 가능	부분적인 법개정	전면적인 법개정
경제활동 참여여성 (A 형 및 B 형)	o 3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 당연적용 준수 o 농어촌 지역 등 협업여성: 임의가입제도 활용	o 일용직 근로여성: 일용근로자 관리제도 도입 o 시간제 근로여성: 주 15시간 근로자는 당연적용 규정 명시	-
경제활동 비참여여성 (C 형과 D 형)	o 비취업 여성 및 중도탈퇴자: 임의가입제도의 적극 활용	o 연금수급자격기간 미충족 여성: 최소연금가입 자격기준 완화 o 이혼여성: 연금분할제도 도입	o 모든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1인 1연금 체제, 즉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의 이층체제로 전환